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73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3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감면 규정의 체계적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병합함(안 제8 조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8조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8조 제5항(현행 제3항과 같음)과 제6항(현행 제4항과 같음)을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8조제4항의”를 “제8조제2항제10호의”로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p> <p>2. 「국가유공자 등 예</p>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사용자</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 신 설 >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신 설 >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신 설 >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한다.

1.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

< 삭 제 >

용하는 경우 : 월 사
용료 100분의 10 감면

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가 비영리목적
으로 공연 및 학술 행
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별표 1
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
료 100분의 50 감면

<신 설>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
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지정한 운영기관
이 운영하는 결제시스
템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

<삭 제 >

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감면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조 제5항, 제6항,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2
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u>사용자</u>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8.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등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